

Korean Tax Update

July 2020, Issue 73

[조세뉴스]

기획재정부, 「2020년 세법개정안」 주요 내용 [전문보기]

1. 코로나 19 피해 극복 및 포스트 코로나 대비 경제활력 제고

(1) 통합투자세액공제 신설: 투자세액공제제도 전면 개편 (조특법 §24 신설 및 §5·§25·§25의4·§25의5·§25의7 폐지)

- 특정시설 투자세액공제 9 개*와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를 통합투자세액공제로 통합·단순화

* R&D 설비, 생산성 향상 시설, 안전 설비, 에너지절약 시설, 환경보전 시설, 5G 이동통신 시설, 의약품 품질관리 시설, 신성장기술 사업화 시설, 근로자 복지증진 시설

- 열거된 특정시설을 세액공제 대상으로 하던 현행 방식(Positive 방식)에서 모든 사업용 유형자산을 대상으로 하되, 일부 자산(토지·건물 등 구축물, 차량·운반구·선박·항공기 등)을 제외하는 방식(Negative 방식)으로 공제대상 개편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투자는 세제지원 제외하되, 일부 예외* 인정

* 중소기업의 대체투자, 산업단지 내 증설투자 등

- (공제율) 당기분 기본공제 + 투자증가분 추가공제

✓ (기본공제) 당해 연도 투자액 × 기본공제율

· 일반 투자분: 중소 10%, 중견 3%, 대기업 1%

·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분: 중소 12%, 중견 5%, 대기업 3%

✓ (추가공제) [당해 연도 투자액 - 직전 3년 평균 투자액] × 추가 공제율(모든 기업 3%)

· 추가공제액 한도: 기본공제액의 200%

(2)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세액공제 공제요건 폐지 (조특법 §25의5, 조특령 §22의9)

- 직전연도 매출액 대비 R&D 비중 2% 이상, 직전연도 R&D 비용 중 신성장 R&D 비중 10% 이상, 상시근로자 수 유지 등 공제요건 폐지

(3) 「조특법」상 세액공제의 이월공제기간 확대 (조특법 §144①)

- 「조특법」상 모든 세액공제의 이월공제기간을 5~10년(현행)에서 10년(개정)으로 확대

(4) 결손금 이월공제기간 확대 (법인법 §13·§76의13, 소득법 §45)

- 결손금 이월공제기간을 10년(현행)에서 15년(개정)으로 확대

(5) 외국납부세액공제 이월공제기간 확대 및 미공제 이월액의 손금산입 허용 (법인법 §57, 소득법 §57)

- 외국납부세액공제 이월공제기간을 5년(현행)에서 10년(개정)으로 확대
- 이월공제기간 내 미공제 외국납부세액 이월액의 손금산입 허용
 - 미공제액 소멸(현행) → 이월공제기간 종료 다음 과세연도에 손금산입(개정)

(6) 적격증빙 없는 소액접대비 기준금액 인상 (법인령 §41, 소득령 §83)

- 적격증빙 없더라도 손금불산입하지 않는 소액접대비 기준금액을 1만원(현행)에서 3만원(개정)으로 인상

(7) 증권거래세율 인하 (증권거래세법 §8,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5)

- 증권거래세율 단계적 인하(△0.1%p)

구분	현행	'21~'22년	'23년
코스피*	0.1%	0.08%	0%
코스닥	0.25%	0.23%	0.15%
코넥스	0.1%	0.1%	0.1%
기타	0.45%	0.43%	0.35%

* 농어촌특별세는 0.15% 현행 유지

(8) 신탁업 활성화를 위한 신탁세제 개선

- 신탁소득에 대한 과세방식 다양화 (소득법 §2의3 신설, 법인법 §5 등)
 - 신탁재산에 대한 법인세 과세방식 선택을 허용하여 수탁자*가 선택하는 경우 신탁재산의 소득에 대해 수탁자에게 과세
 - * 내국법인 및 거주자인 경우에 한정

유형	납세의무자	대상 신탁	과세방식
수익자 과세	수익자	원칙(일반적인 경우)	소득원천별 과세
위탁자 과세	위탁자	실질적 수익자가 위탁자인 경우 * 수익자가 없는 경우, 위탁자가 신탁을 통제·지배하는 경우로서 시행령으로 정하는 경우 등	소득원천별 과세
신탁재산 법인세 과세	1 단계: 신탁재산 2 단계: 수익자	수익증권발행신탁, 목적신탁 등 중 수탁자가 선택하는 경우(위탁자가 통제·지배하는 경우 제외)	2 단계 과세 1) 신탁재산에 대해 법인세 과세 2) 수익자에게 배분시 배당 소득세 과세 * 既납부 법인세 이중과세 조정

- 법인과세 신탁재산 이중과세 조정 (법인법 §18의2·§18의3, §75의13 신설)
 - 법인과세 신탁재산이 수익자에게 배당한 금액에 대해 법인과세 신탁재산에게 소득공제를 적용하고,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신탁재산으로부터의 수입배당금액에 대해서 익금불산입 규정을 배제하여 이중과세 조정
- 신탁 관련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수탁자로 전환 (부가법 §3의2, §10⑧)
 - 원칙적인 납세의무자를 위탁자(현행)에서 수탁자(개정)로 변경

- 다만, 위탁자가 거래당사자(임대)이거나 실질적으로 신탁재산을 통제·지배하는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위탁자 납세의무 유지
- **수탁자 등에 대한 제 2 차 납세의무 부과** (부가법 §3 의 2)
 - 수탁자가 납세의무자인 경우 분배받거나 귀속된 수익 및 재산가액을 한도로 수익자 등*에게 부족액에 대해 보충적 납세의무 부과
 - * 위탁자, 수익자, 귀속권리자
- **신탁재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변경 및 물적 납세의무 신설** (중부세법 §7 등)
 - 납세의무자를 수탁자(현행)에서 위탁자(개정)로 변경
 - 위탁자가 체납한 경우 수탁자가 소유한 신탁재산에 대해 체납처분 가능하도록 수탁자에 대한 물적 납세의무 신설

(9)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제도 재설계 (조특령 §16)

-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제도의 인력요건 강화, 취업기관 범위 확대
 - 인력요건과 관련하여 이공계 등 학사 이상 학위를 갖고 외국 과학기술 연구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연구원으로 강화
 - * 박사 학위 소지자의 경우 외국 연구기관 근무 요건을 2년으로 단축
 - 취업기관을 외국인투자기업 R&D 센터*(현행)에서 국내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정부출연 연구기관 등(개정)으로 확대
 - * 외국인 주식보유비율이 30% 이상 등

2. 포용기반 확충 및 상생·공정 강화

(1) 소득세 최고세율 조정 (소득법 §55①)

과세표준 구간	현행	개정안
1,200 만 원 이하	6%	(좌 동)
1,200 ~ 4,600 만 원	15%	
4,600 ~ 8,800 만 원	24%	
8,800 만 원 ~ 1 억 5 천만 원	35%	
1.5 ~ 3 억 원	38%	
3 ~ 5 억 원	40%	
5 ~ 10 억 원	42%	
10 억 원 초과		45%

(2) 주택보유에 대한 과세 강화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 **법인에 대한 단일세율 신설** (중부세법 §9)
 -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해 종과세율 적용
 - ✓ 2 주택 이하 법인(조정대상지역 내 2 주택 제외): 3%
 - ✓ 3 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 지역 2 주택: 6%

- **주택분 세부담 상한비율 법인 적용 제외** (중부세법 §10)
 - 종과세율*이 적용되는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상한 미적용
* 2주택 이하: 3%,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 6%
- **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시 기본공제 폐지** (중부세법 §8)
 - 종과세율이 적용되는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해 기본공제(6억 원) 폐지
- **법인의 주택 양도시 추가세율 인상 등** (법인법 §55의2)
 - 법인의 주택 양도소득에 대한 추가세율을 10%(현행)에서 20%(개정)로 상향조정
 - 추가세율 적용대상에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권리(입주권, 분양권)를 추가

(3)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법인법 §92·§93·§98, 소득법 §14·§21·§37·§84·§119· §126·§156)

- 거주자가 가상자산*을 양도·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기타소득으로 과세
* 특정금융정보법 §2 제3호
 - (과세방법) 분리과세(원천징수하지 않음)
 - ✓ 세율: 20%,
 - ✓ 손익통산: 과세기간 내 손익통산 허용
 - ✓ 과세최저한: 과세기간별 소득금액 250만원 이하
 - ✓ 신고·납부: 연 1회 신고·납부(5.1.~5.31.)
- 비거주자·외국법인이 가상자산을 양도·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국내원천 기타소득으로 과세 및 원천징수
 - (과세방법) 원천징수
 - ✓ 원천징수 의무자: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상자산 사업자를 통하여 양도·대여·인출시: 가상자산 사업가)
 - ✓ 원천징수 시기: 소득을 지급하는 때(가상자산 사업자가 보관·관리하는 가상자산을 인출하는 때 포함)
 - ✓ 납부시기: 가상자산 또는 원화(양도·대여 대가) 인출시 인출일의 다음 달 10일까지
 - ✓ 원천징수 금액: Min[양도가액 × 10%, 양도차익 × 20%]

※ 조세조약 체결국의 거주자는 조세조약에 따라 비과세·면제 적용 가능(비과세·면제 신청서 제출 필요)

(4) 초과배당 증여이익에 대한 과세 강화 (상증법 §41의2, 상증령 §31의2)

- 초과배당에 대한 소득세와 초과배당에 대한 증여세 중 큰 금액을 과세하던 방식에서(현행), 초과배당 증여이익에 대해 소득세·증여세를 모두 과세하는 방식으로 개정
 - ① 초과배당에 대해 소득세 과세
 - ② (초과배당 - 소득세)에 대해 증여세 과세

3. 조세제도 합리화 및 납세자 친화 환경 조성

(1) 개인 유사법인의 초과 유보소득 배당 간주 신설 (조특법 §104의33 신설)

- 개인 유사법인의 초과 유보소득에 대해 배당 간주
 - (적용대상)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자가 80% 이상 지분을 보유한 법인**(개인 유사법인)
 - * 특수관계자와 함께 최대지분을 보유한 주주
 - ** 사업특성 등을 감안하여 제외 법인은 시행령에 규정
 - (과세방식) 초과 유보소득은 주주에게 배당한 것으로 간주하여 주주에게 배당소득세 과세
 - ✓ 배당간주금액 = 초과유보소득(유보소득* - 적정 유보소득**) × 지분비율
 - * 유보소득: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 (과오납환급금이자 등) - (이월결손금·세금 등)
 - ** 적정 유보소득: Max(유보소득 + 잉여금처분에 따른 배당 등) × 50%, 자본금 × 10%
 - (귀속시기) 각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
 - (지급시기)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기한
 - (원천징수) 개인 유사법인은 간주배당 지급시기에 개인주주에 대해 원천징수
 - (중복과세 조정) 향후 배당 간주금액을 주주에게 실제 배당하는 경우 배당소득으로 보지 않음

(2)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액 계산방식 보완 (법인법 §24, 조특법 §88 의 4)

- 기부금 한도액 계산시 기준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이월결손금을 기준소득금액의 60% 한도로 범위 조정

(3)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적용기한 연장 및 재설계 (조특법 §100 의 32, 조특령 §100 의 32)

- 투자포함형 과세방식의 기업소득 비중을 당기소득의 65%(현행)에서 70%(개정)로 조정
- 임금증가 대상 근로자의 범위를 총급여 7,000 만원 미만 상시근로자(현행)에서 8,000 만원 미만 상시근로자(개정)로 확대
- 초과환류액 이월기간을 1 년(현행)에서 2 년(개정)으로 확대

(4)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배당간주 제도(CFC*)에서 수동소득 범위 확대 (국조법 §17 의 3②)

* Controlled Foreign Company: 저세율 국가의 자회사에 유보한 소득을 배당소득으로 간주하여 과세하는 제도

- 과세대상 수동소득 범위에 ① ~ ④의 소득을 발생시키는 자산의 매각손익 추가
 - ① 주식 또는 채권의 보유
 - ② 지식재산권의 제공
 - ③ 선박·항공기·장비의 임대
 - ④ 투자신탁·기금에 대한 투자

(5) 대손금 손금불산입 되는 가지급금등의 특수관계인 판단기준 명확화 (법인법 §19 의 2, 법인령 §19 의 2)

- 손금산입이 제한되는 가지급금등의 특수관계인 기준 명시
 - 대여 시점의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등

(6) 세액공제 적용기한 종료 (조특법 §104 의 14)

- 제3자 물류비용 세액공제 적용기한 종료

(7)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APA) 소급적용기간 확대 (국조법 §6③)

* Advance Pricing Agreement: 납세자와 국외특수관계자 간의 국제거래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과세당국이 사전에 승인하는 제도

- 상호합의에 의한 사전승인 소급적용 허용기간을 승인 대상기간 직전 5년 이내(현행)에서 7년 이내(개정)로 연장
- 일방적 사전승인 소급적용 허용기간을 승인 대상기간 직전 3년 이내(현행)에서 5년 이내(개정)로 연장

(8) 외국납부세액공제 상 손금산입 방식 폐지 (법인법 §57, 소득법 §57)

- 외국납부세액공제 방식 중 손금산입 방식을 삭제하고, 외국납부세액에 대해 세액공제적용을 선택한 경우에 한하여 해당 외국납부세액을 익금산입하거나 손금불산입하도록 규정을 명확화

(9) 외국법인의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부과근거 추가 (법인법 §75 의 7)

- 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부과대상을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있는자(내국법인 +외국법인)로 확대

* 외국법인 국내사업장 등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자 포함

(10) 경정청구에 따라 국세를 환급하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 조정 (국기령 §43 의 3①5)

- 경정청구에 따라 국세를 환급하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을 납부일 등부터 기산하도록 기산일 조정 (현행: 경정청구일)

기획재정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종합부동산세법·소득세법·법인세법 개정안」 국회 기재위 의결 [전문보기]

‘20.7.28.(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종합부동산세법·소득세법·법인세법 개정안」을 의결함.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의결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등 부동산 3법은 법사위 및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임.

국세청, 다주택 취득자 등 부동산 거래관련 탈세혐의자 413 명 세무조사 착수 [전문보기]

국세청은 최근 수도권 및 일부 지방도시 주택시장의 과열현상에 편승한 부동산 거래관련 탈세혐의를 다수 발견하고 세무조사에 착수함. 1인 법인을 설립하거나, 수차례에 걸친 갭투자를 통해 다수의 주택 및 분양권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다주택 보유자 및 회사자금 유출 혐의 법인 등 부동산 거래를 통한 변칙적 탈세혐의자를 정밀 분석하여 413명을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함.

[판례]

필리핀법인인 원고가 대한민국 내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고정사업장에 귀속되어 대한민국에서 과세되는 이윤의 범위 등 (국패)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7 두 72935 판결

- 필리핀법인인 원고가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운영하는 내국법인 A와 카지노 고객을 모집·알선하여 주면 모집수수료를 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내국법인 A의 카지노 영업장 중 일부 사무실을 국내 고정사업장으로 사용한 사안에서, 원고의 직원들이 이 사건 사무실에서 수행하는 활동이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업활동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고객 모집과 관리 등 원고의 보다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업무는 국외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그 비용도 대부분 국외에서 지출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모집수수료 중 원고의 대한민국 내 고정사업장인 이 사건 사무실에 귀속되는 수입금액은 이 사건 사무실에서 수행한 업무의 대가로 국한되고 원고가 국외에서 수행한 각종 업무에 대한 대가까지 포함된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가 사실상 변론종결시까지 국내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수입금액을 주장·입증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모집수수료 전부가 원고의 국내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수입금액이라는 전제 하에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은 잘못이 없음.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이미 행사하였던 공격방어방법을 그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 처분 취소소송에서 다시 행사하는 것이 확정된 부과처분 취소소송 판결의 기판력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는지 여부 등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7 두 58991 판결

- 이 사건 각 선행 확정판결의 소송물과 이 사건 소의 소송물은 모두 원고1·2·4·5의 각 해당 과세기간 귀속 이자소득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객관적 존부로서 동일하고, 소외1 등의 기망을 이유로 한 각 대여계약의 취소는 이 사건 각 선행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이전에 이미 행사하였던 공격방어방법이므로, 위 원고들이 다시 소외1 등의 기망을 이유로 각 대여계약의 취소를 주장하며 위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이 사건 각 선행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는바, 위 원고들의 청구는 이와 모순 없는 판단을 하기 위하여 기각되어야 하는 한편, 원고3이 소외1 등에게 그들의 기망을 이유로 각 대여계약을 적법하게 취소하였다고 하더라도, 소외1 등에게 위 각 대여계약에 따른 이자를 반환하지 아니한 채 이를 그대로 보유하고 있다면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아 원고3의 담세력이 있는 이자소득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보아야 하는바, 원고3이 소외1 등으로부터 수령한 각 이자를 소외1 등에게 반환하였는지 여부를 따져 본 다음 거부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하므로, 피고들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함.

법인세법 제 13 조 제 1 호 후문 규정 신설 이후, 과세관청의 결손금 감액경정이 항고 소송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패)

대법원 2020. 7. 9. 선고 2017 두 63788 판결

- 구 법인세법 제13조가 2009. 12. 31. 법률 제9898호로 일부 개정되면서 제1호 후문으로 “이 경우 결손금은 제14조 제2항의 결손금으로서 제60조에 따라 신고하거나 제66조에 따라 결정·경정되거나,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한 과세표준에 포함된 결손금에 한정한다.”라는 규정이 신설되었는데, 위와 같은 개정 법인세법 제13조 제1호 후문 규정은 원칙적으로 공제가 가능한 이월결손금의 범위를 신고·경정 등으로 확정된 결손금으로 축소하여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 규정의 개정 경위와 개정 법인세법 제13조 제1호 후문의 문언 및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개정 법인세법이 시행된 2010. 1. 1. 이후 최초로 과세표준을 신고한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 등에 대하여 과세관청의 결손금 감액경정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의무자로서는 결손금 감액경정 통지가 이루어진 단계에서 그 적법성을 다투지 않는 이상 이후 사업연도 법인세의 이월결손금 공제와 관련하여 종전의 결손금 감액경정이 잘못되었다거나 과세관청이 경정한 결손금 외에 공제될 수 있는 이월결손금이 있다는 주장을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과세관청의 결손금 감액경정은 이후 사업연도의 이월결손금 공제와 관련하여 법인세 납세의무자인 법인의 납세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과세관청의 행위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봄이 상당함.

[심판례]

성실공익법인의 확인을 받지 아니한 사업연도에는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취소)

조심 2019 인 3345, 2020. 6. 4.

- 처분청은 2017사업연도에 최초로 성실공익법인으로 확인받은 청구법인이 2014~2016사업연도에는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나, 상증법 시행령 제13조 제5항에 의한 성실공익법인 확인규정은 성실공익법인의 공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성실공익법인의 요건 충족여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고, 성실공익법인의 요건을 추가로 창설하는 규정이 아닌 행정절차 규정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사실상 성실공익법인의 확인 미이행에 따른 별도의 제재규정도 없으므로 이를 상증법 제78조의 가산세 부과에서 제외되는 성실공익법인의 성립요건이라거나 효력발생요건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2013년 개정된 상증법 제16조 제2항에서는 성실공익법인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고, 신설된 성실공익법인의 확인 규정은 상증법 시행령 제13조 제5항에 규정하고 있어서 상증법 제16조의 위임이 없는 점, 상증법 시행령 제13조 제5항은 성실공익법인 확인을 위해 제출받은 서류의 송부 및 확인결과 통보기한만 규정하고 있을 뿐 성실공익법인으로 확인받으려는 서류의 사업연도를 구체적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아 확인서류의 제출기한 미준수를 이유로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였다는 처분청의 과세논리는 실질과세원칙이나 조세법률주의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상증법 시행령 제13조 제5항에 따른 성실공익법인의 확인을 받지 아니한 2014~2016사업연도에 가산세 부과에서 제외되는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유가증권을 개별법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및 회생계획인가 결정을 받은 법인의 주식 평가손실 귀속시기 (기각)

조심 2019 서 1008, 2020. 6. 17.

- 「법인세법」은 주식의 평가방법을 평균법 및 이동평균법으로 규정하되 개별법은 채권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어 명문규정과 다르게 해석하기 곤란한 점, 청구법인은 실질과세측면에서 개별법의 장점을 강조하나 실질과세원칙은 모든 조세법적 관계에 절대적으로 우선되는 것은 아니어서 조세법률주의·조세평등주의·신의성실원칙 등도 함께 고려하여야 하는 점, 「법인세법」은 주식(유가증권) 외에도 재고자산에 대하여도 개별법에 따른 평가를 인정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개별법을 적용하라는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청구법인은 회생계획인가 결정을 받은 법인의 주식은 「법인세법」 제42조 제3항에 따라 시가평가가 가능하므로 쟁점주식을 2015년 거래가액으로 평가한 금액이 쟁점주식의 취득원가가 되어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법인세법」은 자산의 평가손을 원칙적으로는 인정하지 않되 특정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감액할 수 있다는 것이어서 강행규정으로 볼 수 없고, 쟁점법인의 회생계획인가결정은 2015년에 있었기에 2015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하는 방법으로 장부가액을 감액할 수 있다 할 것인데 청구법인은 2015사업연도에 손비로 계상하지 않고 2016사업연도에 쟁점주식을 양도하면서 평가함과 동시에 양도한 주식의 취득원가로 인정하라는 주장인바, 이를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연부금 지급 당시에는 기부채납용 부동산이 아니었으나 최종 잔금 지급일 전에 기부채납용 부동산으로 변경된 경우, 변경되기 전에 지급한 연부금 부분도 취득세 등의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 (기각)

조심 2019 지 1818, 2020. 6. 18.

- 「지방세법」 제10조 제1항 단서에서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5항에서 연부로 취득하는 것은 그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에 따르면 연부취득하는 부동산의 경우 각 연부금 지급일에 해당 부분을 취득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과세하는 것이고, 연부금 지급 당시 해당 부동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할 것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였다면 해당 부분은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중 기부채납 대상으로 확정되기전 연부취득한 부분은 취득세 비과세대상인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벤처기업확인서상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 58 조의 3 제 1 항에 따라 취득세 등을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 (취소)

조심 2019 지 2529, 2020. 7. 1.

- 「조세특례제한법」(2016.12.20. 법률 제14390호로 개정된 것) 제6조 제2항 제2호에서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 제2항에 따른 벤처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벤처기업으로 재확인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취득세 등의 감면을 규정한 「지방세특례제한법」에는 위와 같은 규정이 없는 점, 청구법인과 같이 정당하게 창업벤처중소기업으로 인정받아 4년의 감면기간을 부여받은 기업에 대하여 법령에 근거 없이 4년의 감면기간을 축소하거나 박탈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타당하지 아니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에서 벤처기업확인서상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하여 취득세 등의 감면을 배제하겠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벤처기업확인서상 유효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조세특례제한법」(2016.12.20. 법률 제14390호로 개정된 것) 제6조 제2항 제2호에서 벤처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이 신설되기 전에 조세심판원은 벤처기업확인서상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법인세 등을 감면받을 수 있다고 결정(조심 2016중1262)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은 청구법인이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한 것으로서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특정매입거래에 대한 재화의 공급시기를 재화를 사업장에 인도한 시점이 아닌 소비자에게 판매한 시점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취소)

조심 2020 서 0220, 2020. 7. 7.

-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상품을 외상매입하고, 소비자에게 상품을 판매한 후 일정률의 판매수수료를 공제한 상품판매 대금을 쟁점거래처에 지급하는 거래의 형태를 특정매입거래로 판단하면서, 쟁점거래처가 청구인에게 납품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를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시점으로 보아 미판매 재고금액에 상당하는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는데, 위탁매매거래인지 일반매매거래인지가 불분명하지만 거래당사자가 법적 거래형식을 매매거래로 약정하고 일반매매 형식에 따라 세금계산서가 수수되어 조세탈루나 거래사실이 왜곡되지 아니하였다면 해당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는 없는 점(조심 2016부275), 청구인은 거래당사자간 체결한 특약점거래약정서 제11조에 따라 쟁점거래처로부터 상품이 인도되는 시점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고, 쟁점거래처도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거래내역과 동일하게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 부가가치세의 탈루나 거래사실이 왜곡되지 아니한 점, 위탁매매와 일반매매의 구분 오류에도 불구하고 거래사실이 확인되고 부가가치세 탈루가 없는 경우 당사자가 수수한 세금계산서를 적법한 세금계산서로 인정하는 등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요건을 완화하여 과세권 남용 방지와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로

2019.2.1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 제9호 및 제10호가 신설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거래 당시 수령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됨.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를 위한 순손익액 계산시 쟁점수수료를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경정)

조심 2019 서 0395, 2020. 6. 30.

- 상증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및 제56조 제4항에서 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은 「법인세법」 제14조에 의한 각 사업연도소득에 상증법 시행령 제56조 제4항 제1호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같은 항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의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동 규정의 입법취지가 평가기준일 이전 최근 3년간 기업이 산출한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기준으로 평가기준일 현재의 주식가치를 정확히 평가하려는 데 있는 점, 주식가치를 평가하는 것은 당해 법인의 주주에게 귀속되는 경제적 이익을 산정하는 것인바, 조세정책적 측면에서 「법인세법」상의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의 손익과는 다르다 하더라도 청구외법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실제로 지출한 쟁점수수료를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차감하여 주식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고 정확하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외법인의 비상장주식 평가와 관련하여 순손익액 계산시 사외유출된 쟁점수수료 상당액을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금액 계산시, 기술사용료를 수취하지 아니하여 정상가격으로 익금에 가산된 금액을 '국외원천소득'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재조사)

조심 2019 서 4334, 2020. 7. 10.

-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15항에서 국외원천소득은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으로서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의 계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각 사업연도 소득은 「법인세법」에 따른 익금 총액에서 손금 총액을 차감하는 것이므로 쟁점로열티도 익금에 해당되어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국외원천소득으로 보이는 점,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15항에서 국외원천소득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대응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반면 쟁점로열티와 같이 외국에서 과세되지 아니한 소득의 경우 국외원천소득에서 차감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점,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액 계산시 국외원천소득에 대응하는 직접 또는 간접비용의 경우도 과세표준(분모)에서 제외되는 이유로 국외원천소득(분자)에서 차감하고 있어 쟁점로열티의 경우도 분모인 과세표준에 포함되므로 분자인 국외원천소득에도 포함하는 것이 계산상 합리적으로 보이는 점, 외국납부세액공제는 국외원천소득이 발생한 국가별로 외국에서 실제 납부한 세액 중 해당 국외원천소득에 국내 세율을 적용한 세액까지만 공제되는 것으로 실제 외국에 납부한 세액이 전혀 없으면 공제가 가능한 세액도 없는 것이므로 쟁점로열티를 국외원천소득에 포함하는 경우에도 과다공제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로열티를 국외원천소득에 포함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금액이 늘어나는 경우에도 동일한 소득에 대해 우리나라

와 외국에서 이중으로 과세하는 경우를 차단하려는 제도의 취지에 벗어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으로열티를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금액 계산시 국외원천소득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함.

[예규]

K-IFRS 에 따라 자본항목으로 처리한 신종자본증권을 비상장주식 평가 시 부채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기준-2019-법령해석재산-0403, 2020. 1. 22.

- 내국법인이 「상법」 제 469 조부터 제 516 조의 11 의 규정에 따라 사채의 형태로 발행한 신종 자본증권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자본으로 분류하여 회계처리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63 조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 54 조에 따라 해당 내국법인의 순자산가치를 계산함에 있어 해당 신종자본증권은 「같은 법 시행령」 제 55 조에 따른 부채에 해당하는 것임.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적용시, 사용 장소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과 밖으로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 물류산업용 파렛트의 취득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의 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준-2020-법령해석법인-0086, 2020. 5. 29.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본점소재지를 두고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이동이 가능하여 사용 장소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과 밖으로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 물류산업용 파렛트를 취득하는 경우, 해당 투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 26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23 조에 따른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구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의 투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비영리법인의 법인세 신고를 무신고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7년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기준-2020-법령해석법인-0072, 2020. 5. 29.

- 이자소득과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이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이자소득만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 56 호 서식에 기재하여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경우에는 법정신고기한까지 「법인세법」 제 60 조에 따른 과세표준 등의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국세기본법」 제 26 조의 2 제 2 항 제 1 호에 따라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임.

회생계획을 이행중인 법인에 대하여 이월결손금 전액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서면-2019-법령해석법인-4303, 2020. 6. 11.

- 「조세특례제한법」 제 5 조 제 1 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내국법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 245 조에 따라 법원의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받고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를 시작한 후 회생계획 이행을 완료하기 전에 같은 법 제 283 조 제 1 항에 따라 회생절차 종결결정을 받았으나 법원이 인가 결정한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 10 조 제 1 항 제 1 호의 '법원이 인가 결정한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법인'에 해당하는 것임.

내국법인이 대손사유 발생 시 회수불능 채권금액 중 일부를 지급받기로 하는 보험에 가입한 경우 법인세법상 해당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 금액의 범위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475, 2020. 6. 11.

- 내국법인이 거래처 부도 등의 대손사유로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 대비하여 대손사유 발생 시 회수불능 채권금액 중 일부금액을 지급받기로 하는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 61 조 제 2 항에 따른 "채권잔액"은 해당 매출채권의 장부가액 전체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임.

국고보조금을 수령한 경우 업무용승용차 관련 감가상각비 세무조정 방법

서면-2019-법령해석법인-1435, 2020. 6. 12.

- 내국법인이 업무용승용차를 취득하면서 지급받은 국고보조금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 36 조 제 1 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64 조 제 3 항에 따라 일시상각충당금을 설정한 경우에는 일시상각충당금과 상계하기 전 같은 법 시행령 제 50 조의 2 제 3 항에 따른 상각범위액을 기준으로 해당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 손금불산입 금액을 먼저 계산한 후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는 감가상각비를 기준으로 일시상각충당금 환입에 대한 세무조정을 하는 것임.

폐기물소각시설용 신축 건물을 환경보전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181, 2020. 6. 23.

-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소각시설로서 폐기물 소각 공정상 필수적이고 소각시설 전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신축된 건물은 「조세특례제한법」 제 25 조 제 1 항 제 3 호에 따른 환경보전시설로 보아 특정시설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이나, 이는 해당 건물의 사용현황에 따른 사실판단 사항에 해당함.

복리후생적 목적으로 지급하는 재화 중 개인적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기준의 적용 방법

서면-2020-법령해석부가-1774, 2020. 6. 30.

- 사업자가 2019.2.12. 이후 복리후생적인 목적으로 경조사(명절, 창립기념일, 생일 등)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법」 제 10 조 제 1 항에 따른 자기생산·취득재화를 사용인에게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연간 수차례 제공하는 경우 제공한 재화의 연간 공급가액(시가) 합계액이 10 만원을 초과하게 되는 때 같은 법 제 4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9 조의 2 에 따라 그 초과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 자료는 일반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으며, 어떤 기업이나 개인의 특정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 자료의 내용과 관련하여 의사 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당 법인의 전문가와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KPMG 삼정회계법인

Tax Center of Excellence

kr-fmtaxtcoe@kr.kpmg.com